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0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3.

발 의 자 : 문진석 · 이연희 · 이정문
홍기원 · 이재관 · 최혁진
손명수 · 강준현 · 이주희
복기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하되,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)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은 물가와 임금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100만원으로 유지되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, 그 결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액의 소득만 얻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부양의무를 지는 가구의 세부담 경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,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

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부양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제2호 중 “100만원”을 “300만원”으로, “500만원”을 “75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100만원”을 “300만원”으로, “500만원”을 “75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기본공제)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(자연인만 해당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	제50조(기본공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<u>100만원</u> 이하인 사람(총급여액 <u>500만원</u>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)	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300만원</u> ----- ----- <u>750만원</u> ----- -----
3. 거주자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(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다)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<u>100만원</u> 이하인 사람(총급여액 <u>500만</u> <u>원</u>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) 가. ~ 마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----- ----- <u>300만원</u> ----- ----- <u>750만원</u> ----- ----- -----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